‘26. 11.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스 마 트 유 통 과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6-138

제출연월일 : 2026. 11.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 김제시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홍보판매장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필요

○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를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의 변경

(현행)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농특산물 판매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6조)

○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2조)

○ 입점상품, 입점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6조)

○ 판매가격, 판매 방법, 판매대금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 홍보, 비용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제22조)

3. 참고사항

가. 방침 결재 여부 : 여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여

다. 예산수반 여부 : 여

라. 비용추계서 : 여

마.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바.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대상 여부 : 여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자.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9. ~ 10. 19.(20일간)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규제심사 결과 : **비중요규제**

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마.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바.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아. 관련 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2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자. 참고자료

-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온·오프라인)
-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업체 및 상품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장수군)

차. 현행 조례

카. 방침결정문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 판매장”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농특산물홍보판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시민 또는 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시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상품 또는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마친 상품으로 한정한다.

4. “인터넷 쇼핑몰”이란 시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입점상품”이란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 승인을 받고 전시 및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7. “입점업체”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농특산물 판매장의 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농특산물 육성을 위하여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농특산물 판매장의 기능) 농특산물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전시 및 판매

2. 제1호에 따른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시장 정보수집 및 홍보

3.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 및 민간위탁) ① 농특산물 판매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특산물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자는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특산물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보증 및 협약 위반에 따른 이행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 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과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계약 조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인도·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입점상품을 취급하고, 전시·판매할 농특산물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정한다.

④ 수탁자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협약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감독

등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시설물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취소 또는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조건 또는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시설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취소 또는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위탁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의 납기 및 납부방법 등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위탁 운영 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취소나 제한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사항의 보고) ① 위탁 운영 시 운영자는 시설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사항을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자 등의 역할 및 책무) ① 시장은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자로서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 물류관리 등을 담당한다. 다만, 농특산물 판매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운영자로 본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정보 제공,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입점업체가 제공한 상품정보에 대한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으며, 제공한 정보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시장에게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 등에 있어 농특산물 판매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특산물 판매장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온·오프라인상의 상품매매 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고 상호간의 거래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⑦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⑧ 입점업체는 농특산물 판매장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점상품)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입점신청이 가능한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2.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원료로 관외에서 만들어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14조(입점절차) ①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여확약서
3. 그 밖에 입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입점의 탈퇴) ①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을 탈퇴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점업체의 제1항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진행 중인 거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반품, 교환, 수리 등 사후 관리 완료 여부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16조(입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농특산물 판매장에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신청 또는 상품정보의 허위·누락·오기, 위법·부당한 신청, 전자상거래 질서 위반, 운영지침 불이행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고객정보의 부당한 이용, 고객의 반복적 불만 접수, 불량·변질·파손 상품 제공·포장 미비·송장번호 누락 등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4. 「식품안전기본법」 위반 상품,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 상품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 다른 지역 생산물·가공식품을 판매한 경우, 시중가 대비 과도한 가격 또는 정보 미흡 상품을 판매한 경우

5. 상품 판매가 가능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6.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특산물 판매장 또는 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의 취소 및 재입점 제한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점업체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취소 또는 제한의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입점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인행사, 대량 주문 등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장은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판매가격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8조(판매 방법)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관내·외 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시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지역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등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19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되,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정산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금 중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되,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
3. 농특산물 판매장 자체 수수료

④ 판매대금 정산 시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및 이벤트) ① 시장은 농특산물 판매장의 매출 확대를 통한 입점업체 및 관내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이벤트를 할 수 있다.

1. 온라인 홍보 마케팅
2.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3. 상품 할인, 할인 쿠폰 및 적립금 지급 등의 이벤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마케팅 및 이벤트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마케팅 및 이벤트에 사용되는 비용은 시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및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지원) 시장은 농특산물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0조의 홍보 및 이벤트 비용
2. 상품 배송 및 포장 관련 비용(배송비, 포장재 개발·제작비 등)
3. 상품 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 등)
4. 판매 촉진 관련 비용(입점상품 할인행사, 입점업체 수수료 등)
5. 그 밖에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특산물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

및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 및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점대상 업체 및 상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입점 승인을 받은 업체 및 상품은 이 조례에 따라 입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지평선몰”을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지평선몰”로 한다.

[별표]

입점업체 준수사항(제12조제7항 관련)

1. 입점업체는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 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2.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A/S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입점업체는 재고 부족 등 판매,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미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상품의 품절, 상품 숨김 등 판매주문 상태에 반영시켜야 한다.

4. 입점업체는 반품 시 판매가 불가능한 농·수·축·임산물 등 생물일 경우 “반품불가표시” 처리를 할 수 있다.

5. 입점업체는 Q&A, 고객게시판, 1:1 고객문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6.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 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발주 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7. 입점업체는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신청서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td><td>접수일자</td><td></td></tr>
<tr><td rowspan="2">신청자</td><td>성 명</td><td></td><td rowspan="2">업체명</td><td row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td><td>업태/종목</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업자 구분</td><td colspan="3">과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 ) / 간이과세자( )</td></tr>
<tr><td colspan="2">전화번호</td><td></td><td>휴대전화</td><td></td></tr>
<tr><td colspan="2">신청품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제품카탈로그
또는 사진</td><td>유 / 무</td><td>제품 포장</td><td>유 / 무</td></tr>
<tr><td colspan="2">구비서류</td><td colspan="3">1. (생산농가) 농어업경영체등록증 1부
2. 영업관련(허가·신고·등록 등) 증빙자료 1부
※「식품위생법」,「양곡관리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제품·시설 인증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1부
5. 입점신청 제품목록 총괄부 1부
6.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
7. 원산지 확인 증명원 등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td><td colspan="3">「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 신청자 자격 검토, 심사선정 등록, 관리 및 안내 연락
• 수집 항목 :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점 미선정 업체의 경우 심사 완료 후 즉시 파기, 입점업체의 경우 퇴점(계약 종료 및 정산 완료) 시까지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점 신청 및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td></tr>
</table>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참 여 확 약 서

본인은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하여 거래함에 있어 상거래 질서나 미풍양속 등 공공윤리를 해치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상품 포장 및 배송에 있어 본인의 책임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할 것이며, 교환·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4. 본인은 김제시 및 고객으로부터 입점상품에 관한 정당한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5.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거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호하고,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유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점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 탈퇴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성 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탈퇴사유		□ 개인사정 □ 폐업 □ 기타( )		
탈퇴신청품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탈퇴(퇴점) 처리, 잔여 대금 정산 및 사후 관리, 이력 확인 • 수집 항목 :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탈퇴사유 • 보유 및 이용기간 : 탈퇴 처리 및 사후 관리(잔여 대금 정산, 민원 해결 등) 완료 후 즉시 파기 (단, 타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탈퇴 처리 및 정산 절차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사업수행 및 운영비 등에 따른 비용

나. 관련 조문 : 제21조(비용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 : 2026 ~ 2030년

2)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

- 오프라인(4) : 벽골제점, 김제역점, 모다점, 새마루점
- 온 라 인(8) : 지평선몰, 생생장터, 네이버, 쿠팡, 우체국, 카카오톡, 패션플러스, 토스쇼핑

3) 내　　용 : 사업비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등

나. 추계 결과

1) 세입

(단위 : 천원)

연도별	총액	구 분	내 용	
2026년	30,700	세외수입(이자수입)	판매장 정산 통장 이자 수입	700
		세외수입(기타사업수입)	판매장 수수료 수입	30,000
2027년	30,700	세외수입(이자수입)	판매장 정산 통장 이자 수입	700
		세외수입(기타사업수입)	판매장 수수료 수입	30,000
2028년	30,700	세외수입(이자수입)	판매장 정산 통장 이자 수입	700
		세외수입(기타사업수입)	판매장 수수료 수입	30,000
2029년	30,700	세외수입(이자수입)	판매장 정산 통장 이자 수입	700
		세외수입(기타사업수입)	판매장 수수료 수입	30,000
2030년	30,700	세외수입(이자수입)	판매장 정산 통장 이자 수입	700
		세외수입(기타사업수입)	판매장 수수료 수입	30,000

2) 세출

(단위 : 천원)

연도별	총액	구분	내 용	
2026년	458,740	사업비	할인 프로모션, 택배비 등 사업 추진	139,640
		운영비	인건비, 판매장 유지보수 운영비 등	319,100
2027년	552,000	사업비	할인 프로모션, 택배비 등 사업 추진	180,000
		운영비	인건비, 판매장 유지보수 운영비 등	372,000
2028년	565,800	사업비	할인 프로모션, 택배비 등 사업 추진	180,000
		운영비	인건비, 판매장 유지보수 운영비 등	385,800
2029년	590,290	사업비	할인 프로모션, 택배비 등 사업 추진	190,000
		운영비	인건비, 판매장 유지보수 운영비 등	400,290
2030년	605,505	사업비	할인 프로모션, 택배비 등 사업 추진	190,000
		운영비	인건비, 판매장 유지보수 운영비 등	415,505

다. 재원조달방안

1)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김제시 일반회계 예산 중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비에서 충당

2) 현재 프로모션 비용, 택배비, 유지보수비 등은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각각 편성·집행

3. 작성자 : 농식품유통팀장 신경은

스마트유통과장 임 미 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153,500
세외수입 (이자수입)		700	700	700	700	700	3,500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세 출		458,740	552,000	565,800	590,290	605,505	2,772,335
사업비		139,640	180,000	180,000	190,000	190,000	879,640
운영비		319,100	372,000	385,800	400,290	415,505	1,892,695
재원 조달		458,740	552,000	565,800	590,290	605,505	2,772,33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58,740	552,000	565,800	590,290	605,505	2,772,335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자체재원	458,740	552,000	565,800	590,290	605,505	2,772,335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규제심사 결과 : 비중요규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스마트유통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결과 회신(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스마트유통과-6521(2026. 9. 9.)호와 관련하여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중요규제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회신 1부. 끝.

기 획 감 사 실 장

2026. 9. 11.

주무관 최보훈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2827 (2026.09.11)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ohgns082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6. 9. 11.

자치법규명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안(○)
소관부서	스마트유통과	담당자 (행정전화)	3350 신경은	기타	스마트유통과-6521 (2026.09.09.)
제·개정 및 폐지 이유	○ 김제시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홍보판매장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필요 ○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를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농특산물 판매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6조) ○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2조) ○ 입점상품, 입점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6조) ○ 판매가격, 판매 방법, 판매대금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 홍보, 비용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제22조)				
검 토 의 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개정안은 농특산품 판매장의 입점 승인 취소·재입점 제한·관리·감독·시정명령 등으로 규제 사안에 해당하나 상위법을 근거로 한 점, 재입점 제한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점의 재입점만을 제한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중요규제에 해당함**				
규제심사 결 과	신설(○)	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
작성자	기획감사실 : 서해영(3206) / 의회법무팀장: 이혜라(3213) / 담당자: 최보훈(3723)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스마트유통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38)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스마트유통과 - 7088호2026. 9. 29.) 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전북김제038) 1부. 끝.

김 제 시 장

주무관	현지영	여성가족팀장	최남	고육청소년팀장	대결 2026. 9. 30. 황주애	고육가족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고육가족과-32748 (2026. 9. 30.) 접수 스마트유통과-7136 (2026. 9. 30.)

우 5438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김제시청)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4 팩스번호 063-540-6929 / wigud231@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전북김제038</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스마트유통과</td></tr>
<tr><td>담당자명</td><td>신경은</td><td>전화번호</td><td>063-540-3623</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9월 29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스마트유통과)</td><td colspan="4">Ⅰ. 개요
□ 개정목적
○ 김제시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홍보판매장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필요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농특산물 판매장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입점상품, 입점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 판매 방법, 판매대금에 관한 사항
○ 홍보, 비용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현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
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교육가족과)</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김제시 복지환경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현지영/063-540-6904)

스마트유통과장 귀하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스마트유통과-7480

제 목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결과 보고

1. 스마트유통과-7058(2026.9.29.)호와 관련입니다.
2.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나. 조회기간 : 2026. 9. 29. ~ 10. 14.
다. 조회방법 : 공문협의
라. 조회내용 :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설명 및 의견수렴
마. 조회결과 : 의견없음. 끝.

2026. 10. 15.

농식품유통팀장	신경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협조자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스마트유통과-7597

제 목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결과보고

1. 스마트유통과-6947(2026.9.23.)호와 관련입니다.
2.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9.29. - 10.19.(20일)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결과 : 의견없음. 끝.

2026. 10. 20.

농식품유통팀장	신경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협조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11회 조례 · 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15222(2026. 10. 28.)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11회 조례 · 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자 : 2026. 10. 27.(화) 14:3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8명
4. 심의안건 : 6건(조례 6)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6건**

연번	심의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비 고
계	총 6건 (조례 6)			
1	2026-52	성장전략실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53	투자유치과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54	경로장애인과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2026-56	건 축 과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57	건 축 과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59	스마트유통과	김제시 농 · 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2026년 제11회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성장전략실장, 투자유치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건축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스마트유통과장)

주무관 최보훈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전결 2026. 11. 2. 서해영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5396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qhgns082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6. 21., 2022. 4. 20.>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신설 2022. 4. 20., 2026. 7. 21.>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 7. 12., 2017. 7. 26., 2022. 4. 20.>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5. 4. 1.]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조례 제174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장 행정재산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일시사용허가·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이 변경되어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 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12.10.>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12.1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 7. 17.>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시”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종자산업법」 제2조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8.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상거래법)

[시행 2026. 7.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참고자료 :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온 · 오프라인)

1. 매 장 수 : 12개소(온라인 8, 오프라인 4)

2. 매장현황

- 온라인몰(8)

연번	플랫폼명	개(입)점일	운영주체	비고
1	자체몰 (지평선몰)	2008.12.15. (2023.04.01.직영)	지평선몰(김제시농업기술센터)	개점
2	생생장터	2022.04.28.		입점
3	네이버	2023.04.01.		입점
4	쿠팡	2024.07.01.		입점
5	우체국	2024.11.01.		입점
6	카카오톡	2024.03.01.		입점
7	패션플러스	2021.05.01.		입점
8	토스쇼핑	2026.05.08.		입점

- 오프라인몰(4)

연번	매장명	개점일	위치	면적	비고
1	벽골제점	2006.09.15. (2023.4.1.직영)	벽골제 신정문 옆	152.22㎡	직영
2	김제역점	2009.05.15.	김제역 내	34㎡	직영
3	모 다 점	2021.04.26.	모다아울렛 전주김제점 지하 1층	166.15㎡	직영
4	새마루점	2024.06.05.	김제지평선새마루휴게소 1층	47.04㎡	직영

□ 참고자료 : 김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업체 및 상품 현황

1. 입점상품 : 총 267개 * 2026년 8월 기준

2. 입점업체 및 상품내역

연번	입점업체	상품분류	상품명	비고
1	(유)지평선누룽지	가공식품	지평선현미누룽지 외 2	
2	(주)수비드림	가공식품	수비드 닭가슴살 6종 10팩 외 1	
3	365영농조합법인	가공식품	리얼연근칩 40g*9봉입	
4	공덕농협	쌀/잡곡 외 1	상상예찬쌀 골드 20kg 외 3	
5	공덕농협농산물 가공사업소	가공식품 외 6	우리쌀 유기농 떡볶이떡 외 21	
6	글로벌투게더김제	사회적기업	우리밀프리미엄 쿠키 3종, 6종 선물 세트 외 2	
7	금만농협미곡처리장	쌀/잡곡	황금벼리 신동진 20kg	
8	김금이발효연구소	가공식품	김금이전통된장 500 1kg	
9	김제농협	쌀/잡곡 외 1	벽골제쌀 새청무 20kg 외 2	
10	김제지평선귀리농장	쌀/잡곡	생귀리 1kg	
11	꽃깔봉농장	기타	꽃깔봉 참기름 들기름 선물세트 외 1	
12	농업회사법인 라비엘주식회사	가공식품	라비엘 비트사과즙 100ml 30봉 외 4	
13	농업회사법인 베리라이스 주식회사	과채류 외 1	프리미엄 설향 금실 제철 생딸기 850g 이상 외 1	
14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온도농장	가공식품	들녘 블루베리청 160g 외 2	
15	농업회사법인(주)농산	지평선파프리카	오아로 파프리카 1.5kg 외 4	
16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긍정농부차씨	기타	긍정농부차씨 목이버섯 국산콩두유 든든우유 190ml 15팩 2박스 외 2	
17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두레마을	쌀/잡곡 외 1	10인농부 신동진 오분도미 4kg 외 7	

연번	입점업체	상품분류	상품명	비고
18	농업회사법인행복뜰유한회사	과채류	행복뜰 표고버섯	
19	농업회사법인 힘찬농원유한회사	가공식품	힘찬 토종엉겅퀴 진액 30포(국내산 100%) 외 6	
20	다복솔식품	전통식품 외 1	다복솔 모싯잎송편(소) 외 7	
21	덕진유과	전통식품 외 2	덕진 컵유과(사과유과) 외 8	
22	동김제농업협동조합	과채류 외 1	샐러드 통야채1kg 외 4	
23	두리원	가공식품	시골 고추장 1kg 외 1	
24	둥지농장	샐러드	그린핏 유러피안 샐러드 상추 600g, 1kg	
25	무드인허니	벌꿀/화분	무드인허니 벌집꿀 선물세트 80*3개입 외 4	
26	미소진	전통식품	토종 약 도라지고 600g - 보자기 포장 서비스 외 1	
27	바지런농장	분말	팔곡미인 미숫가루 500g/1kg 외 4	
28	박씨네누룽지	누룽지 외 1	박씨네 누룽지 종합선물세트 외 8	
29	백구농협	쌀/잡곡	지평미인쌀 신동진 20kg 외 1	
30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가공식품	인삼아빠 수정과 80ml 15포/30포 외 3	
31	부전장미농장	화훼	생화 미니장미 혼합구성 30송이 이상 외 5	
32	사르밧한과	한과	사르밧한과 세트 2호 외 2	
33	새만금유기농꾸지뽕농업법인(유)	건조제품 외 5	유기농 꾸지뽕 뿌리(건조) 500g/1000g 외 12	
34	성림오엔에프	배 외 1	성림 유기농배7.5kg(11-12과) 외 2	
35	수생수산	축/수산물	송수생 민물 향어회 250g/500g/750g	

연번	입점업체	상품분류	상품명	비고
36	야곱의꿈농장	가공식품 외 2	볶은 작두콩차 200g 외 7	
37	영농조합법인 청하농원	가공식품 외 1	청하농원 사과즙 100ml 100봉 외 7	
38	오성푸드	가공식품 외 2	현미 컵누룽지 33g 30개입 외 9	
39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	가공식품	우리밀국수 통밀국수 쌀국수세트 외 7	
40	이고장식품	냉동/간편조리식품	흑임자죽 300g 외 5	
41	이택영농조합법인	쌀/잡곡	방아찧는날 신동진 10kg 외 3	
42	자연에마음	가공식품 외 1	작두콩차 50g 외 6	
43	주식회사 상상	전통식품 외 1	무설탕 해풍 쑥떡 10개입 외 5	
44	주식회사 토마토마 농업회사법인	가공식품	하랑 토마토 주스 30팩/60팩	
45	지평선농부들영농조합법인	가공식품 외 1	생강진액 생강차 스틱 24g×45포 외 2	
46	착한벌집꿀농장	벌꿀/화분	벌집꿀선물세트 1.8/3.6kg 사양벌집꿀	
47	청춘목장	가공식품	목장애 망고 요거트 150ml×10병 외 2	
48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축/수산물 외 1	한우 등심 400g 외 18	
49	코엔에프유한회사	가공식품	카페포션 슈가프리 헤이즐넛 25g×12개입 외 6	
50	태양별	가공식품	호박팥차 50티백*2통 외 6	
51	토마토마	과채류	하랑 실키 핑크 토마토 2kg, 3kg 외 1	
52	티(TEA)나다	가공식품	돼지감자차 200g 외 4	
53	팜마실	스마트팜전용관	유러피안 샐러드 상추 3~4종 1kg	
54	팜송 농업회사법인	버섯 외 2	참송이버섯 가정용 1kg 외 3	
55	한푸드	가공식품	한끼뚝딱 누룽지 150g 8개입 외 1	

□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현황

지자체	조례		조례명	제정일
	여	부		
전북자치도		○	-	-
전주시		○	-	-
군산시	○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024.09.19.
익산시		○	-	-
김제시	○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2010.06.01.
정읍시	○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025.05.02. 2012.02.23.
남원시	○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04.14.
완주군	○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	2025.09.30. 2023.12.21.
진안군	○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2023.10.11. 2021.12.15.
무주군	○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2007.08.13. 2024.07.01.
장수군	○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017.10.19.
임실군	○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2025.02.11.
순창군	○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023.04.28. 2023.06.29.
고창군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024.12.16. 2021.02.01.
부안군	○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	2015.11.06.

□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장수군)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0. 19.] [조례 제2242호, 2017.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몰"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아 장수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장수몰은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장수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

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제4조(입점상품) 장수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2.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포함]

제5조(판매방법) 장수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며, 장수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장수몰.com”으로 한다.

제6조(입점절차) ① 장수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승인한다.

제7조(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요청 시 즉시 탈퇴 처리한다. 다만,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 또는 입점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

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매매 부적합 상품 등록 및 판매

5.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및 판매

6.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수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장수몰 운영 책무) ① 군수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상호 간에 있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한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등록, 포장 및 배송 등에 있어 장수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품배송) 입점업체는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몰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2조(홍보)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장수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제1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장수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활성화하고,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의 홍보비
2. 상품 배송비

3. 상품 포장재 개발·제작비

4.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

5. 장수몰 입점업체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비

6. 그 밖에 장수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제정 2017.10.19.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조례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특산품 홍보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이하“홍보판매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이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홍보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가공식품 포함)의 홍보 판매
2. 판매 확충을 위한 시장(市場) 정보수집 및 홍보
3. 홍보 및 상설판매장 시설 유지관리
4. 그 밖에 홍보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설) 홍보판매장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농·특산품 홍보관
2. 시 농·특산품 판매관

제4조의2(전시판매품목) 홍보판매장에서의 판매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지평선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은 상품
2. 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특산품
3. 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

제5조(운영) ① 홍보판매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판매장의 시설물 위탁요령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김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시 제3조에 따른 판매장의 홍보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택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홍보판매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09:00에서 18:00까지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홍보판매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 및 추석 당일
3. 근로자의 날
4. 석가탄신일
5. 성탄절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장일과 개장·폐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홍보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할 경우에 해당함)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농·축협

2. 영농조합법인, 유통관련 생산자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미리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판매장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3. 위원 : 김제시의회의원,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홍보축제실장, 회계과장,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관계관, 농업 및 홍보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등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농산물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 9. 17.>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계약보증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 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과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홍보판매장 내에서는 시 농·특산품을 취급·판매하여야 한다.

2.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처분·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5. 수탁자는 홍보판매장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3. 시장의 지도·감독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임대의 경우

5.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생산자 표시판매) 홍보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판매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① 홍보판매장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인 사용료의 납기 및 납부방법 등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홍보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취소나 제한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판매장의 공용면적과 이익이 직접 발생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사항의 보고) ① 운영자는 시설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변상) ① 홍보판매장의 모든시설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잃거나·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홍보판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침결정문

문서번호	스마트유통과 4691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6. 7. 2.
공개여부	부

주무관	팀장	과장	소장	부시장	시장	결재
김지훈	윤선진	임미경	이승종	이혜서	정성주	
협조	예산팀장 최시아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제 시

스마트유통과